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2024년 ‘디지털 지적의 날’, ‘K-Geo 페스타’ 행사를 맞이하여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I .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추진목적

-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

2. 기본방향

-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공로자를 우선 선발
-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나거나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II.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시기 및 장소

- 일시: '디지털 지적의 날'('24.9.16), 'K-Geo페스타'('24.11.6) 행사 시
 * 행사 여건,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미정

2. 포상종류 및 규모

- (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 (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예정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대상

-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발전에 유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기관)
 - * (개인) 공간정보산업 및 지적재조사 분야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공간정보기술자,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 ** (단체)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 분야 사업자 또는 단체

나. 추천기간 :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일로부터 2024. 5. 16(목)까지

다. 제출방법 : 공문, e메일(공간정보산업 부문 : ssw126@korea.kr, 지적재조사 부문 : shimchun8@korea.kr),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 (우편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III.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 및 표창기준

-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 「2024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수

2. 수공기간

- 추천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3.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수여일 :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 추천일 :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마.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바.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사. 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다시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일반국민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광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

-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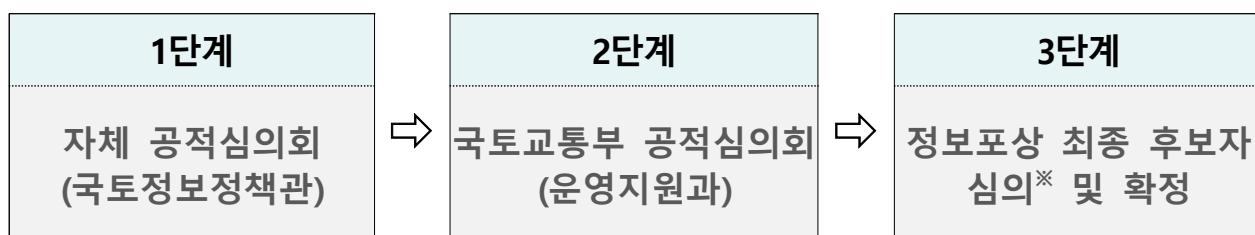
IV. 후보자 공개 검증 및 대상자 선정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검증대상) 정부포상(장관표창 제외) 후보자 전체
- (검증방법) 후보자 주요 공적 등을 국민생각함, 국토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15일 이상) 및 의견수렴
 - * 개인정보가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에 공개됨을 사전 고지 및 동의서 징구
- (검증결과 활용)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당사자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 사실, 수사 진행,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접수 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 · 검찰 · 경찰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4)에 즉시 통보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단계별 심사·검증을 통해 공적 우수자를 선별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결재 → 대통령 재가 확정

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 1)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② ‘정부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 2)

③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서식 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일반 국민일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④ ‘공적조서’ 1부(서식 4)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⑤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5)

⑥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 6)

⑦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서식 7)

(서식 1)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	-	-	-	국세	관세	자본세		
					-	-	-	-	-	-	-		
					-	-	-	-	-	-	-		
					-	-	-	-	-	-	-		
《예시》					-	-	-	-	-	-	-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	-	-	-	-	-	-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선탑 산업	20-02-19	-	-	-	-	-	-	-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옹조 근정	25-02-19	-	-	-	-	-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00. 00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⑥ 부분은 국토교통부 일괄조회

-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3)

-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 세 :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8), 관 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공적 요약서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비고
1			박○○ (朴○○) 00. 00. 00.	장관표창 (00년00월)	
2			박○○ (朴○○) 00. 00. 00.	장관표창 (00년00월)	
3			박○○ (朴○○) 00. 00. 00.	장관표창 (00년00월)	
4					
5					
6					
7					
8					
9					
10					

□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적개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1	(주) ○○ ○○○	부장	○○○ (○○○) 00.00.00	00년 00월	정부 포상	없음	<p>(작성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업인으로 공간정보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매출액 ???억원 ■ 공간정보 분야 벤처회사 설립하여 청년 IT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GIS전문인력 ???명 채용 ■ 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정밀도 향상 등 특허출원 ??건 7대지하 시설물 조사 및 탐사
2	○○(주)	차장	○○○ (○○○) 00.00.00	00년 00월	장관 표창	-	<p>※ 공적심사 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므로, 공적사항 중 정량적 실적 위주 요약 및 그에 따른 효과가 부각 되도록 작성 철저 요망</p> <p>※ ■ 는 맑은고딕체, 11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p>

(서식 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 군번(군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자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의원면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무원의종류	재직기간			12) 특정직	~ (년 월 일)	
8) 일반직	~ (년 월)			13)교원	~ (년 월 일)	
9) 별정직	~ (년 월)			14)군인	~ (년 월 일)	
10) 기능직	~ (년 월)			15)군무원	~ (년 월 일)	
11) 고용직	~ (년 월)			16) 기타()	~ (년 월 일)	
합계 ①			년 월 일			
17)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계 ④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③-④)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류	일자		포상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1) 과거표창			
22) 작성자(인사담당자)				23)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관명 :				(직인)		

(서식 4)

공적조서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정부포상	추천순위	
공적분야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스마트국토엑스포 or 디지털 지 적의 날, 둘 중 하나만 작성)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맑은고딕체, 12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 조사자 :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 추천관 : 기관장(예 : 국토교통부장관)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 ..	
... ~ ..	
... ~ ..	
공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p>※ 맑은고딕체, 12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맺음은 기여함, 했음, 다짐, 하였음 등 □으로 끝맺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식 5)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증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6)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현	(~) (~) (~) (~)
	공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 원칙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p>※ 맑은고딕체, 12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p>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7)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 내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 맑은고딕체, 12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			
확인 결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 (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 맑은고딕체, 12pt 크기, * 는 맑은고딕체, 10pt 크기(임의 조정 금지)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